



가

[ 2015.1.1] [ 1758 , 2014.12.31, ]

( ) 02 - 748 - 5367

1 ( ) 가 ( "PQ " )  
, / , ( ' ' )  
가 ( ' PQ ' ) .

2 ( ) .  
1. 「 가 」 ( " " ) 42 4

2. 6 8

3 ( ) PQ  
PQ  
PQ 가 PQ 5

4 (PQ ) 가 PQ 가 , ( )  
가 가

PQ , , 가

5 ( ) 「 가 」 23 PQ PQ  
, [ 3] [ 3-1] .

20% 가 , ( ) 가 .  
가 가

가 가

100 .



가 . , 가  
가 , 가

가 .  
4) 「 」 530 2 2 4  
가 . ,  
가 .

. ‘ . ’ 가 .  
1) 「 」 18 , 「 」 7 , 「 가  
」 102 , 「 」 61 , .  
( ) 가 ,

2) ‘ , ‘ , ‘ 가 ’ , ‘  
,  
가 .

3) 「 」 18 , 「 」 7 , 「 가  
102 , 「 」 61 가  
가 .

3. 가  
가. 가 ( ) 「 」 36

가 가 .  
. ‘ 가 ’ 가 가 가 .  
1) 가 가 가 70 . ,  
2000 80

2) 80 . ,  
90  
. ‘ 가 ’ ( ) 가  
가 .

. 가 ‘ 가 ’ 가 .

4.  
가. 가

1) 가 3 가 가  
.  
2) 가 가 .  
. , 가 .

가 가

가

가

1

PQ

가

가

가

7 (

가 )

( 2)

,

( " " )

가

1.1

가

( 가

, )

,

, 가

2.

가

가

3.

( )

가

가

1.

가

가

가

2.

가.

1)

가

가

( )

가

2)

5

가

가

가

1)

가

가

가

2)

가

가

가

3)

가

가

가 6 4 3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1.

1

가

가

가. 25% 30% : 2

. 30% 35% : 4

. 35% 40% : 6

. 40% : 8

2.

2

2

가

가

가

1

가

가. 12.5% 20% : 3

. 20% : 4

3.

가 10

가 가

가 가

가

가

1.

가

2.

가

10% ( 가 1,000

5% )

8 (PQ ) PQ 가

1. PQ ( 1 )

2. ( 2 )

3. ( 3 )

4. ( 4 )

5. < >

6. 「 」 36 가 ( 가 )

7. ( 8 )

8. 가

9. 가 가 ( ) , ,

10. < >

11. 「 」 18 , 「 」 7 , 「 가 」 102 , 「 」 61

12. 1

PQ PQ

1

3

9 ( ) PQ 가

PQ

10 ( )

가

1. 가

2. PQ PQ 가 .

3. ( , 3

가 )

4. (PQ

)

5. 가 7 2

100 50

6. 가 , 10% ( 가 1,000 5% )

7.

PQ ( , , , , , 1

) PQ ,

가 5 .

11 ( 가 ) PQ

가 .

1. 가

가. 가 500

1) 가 BB+( , BB0)

2) 가 B+

3) 가 가 BB+( , BB0)

. 가 500

1) 가 BB-( , B+)

2) 가 B0( , B-)

3) 가 가 BB-( , B+)

2. < >

90 .

11 2( 가 ) 가 , , , 가 ( 가 가 ) 가 11 1 3 ,

가 가 , 가 , , 가 ( 가 가 ) 가 .

12 ( ) 가 , 33 1 ( " " ), , 가 . .

1 3 PQ 가 ,

3 3 .

13 ( ) 11 ( 5 2 ) .

12 1  
가

14 ( 가 )  
가  
가

42 1

가

15 ( ) PQ

가

가

1.

2. 가 가

가

5 2

< 594 ,2005.2.21 >

1. 2005. 2. 21

2. 2005. 6.30 ( 41301 - 2025 , 2004.1.13)

3.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4 가

가

. 가 [ 1]

4. 5 3 , 6 3 1 10 2 가

가 가

가. 가 500 : 2006 7 1

. 가 100 500 : 2007 7 1

5. 가

< 3587 ,2006.11.6 >

1. 2006.11.6

2. 가 가 가

- 가. 가 500 : 2006 7 1
- . 가 200 500 : 2007 7 1
- 3. 가 .

< 1387 ,2007.5.1 >

- 1. 2007. 5. 1. .
- 2. 5 3 , 6 3 1 10 2 가
- 가 가 .

가. < >

- . 가 200 500 : 2007 7 1
- 3. - 3587( ' 06. 11. 6.) “ 가 ”

< 296 ,2008.1.23 >

- 1. 2008. 1. 14. .
- 2. - 1387( ' 07. 5. 1.) “ 가 ”

< 419 ,2008.11.1 >

2008. 11. 1. .

< 444 ,2009.8.6 >

.

< 489 ,2010.12.30 >

- 1 ( ) 2011. 1. 1. .
- 2 ( ) 가

.

< 507 ,2012.1.9 >

1 ( )

2 ( )

가

< 510 ,2012.5.1 >

1 ( ) 2012 5 1

2 ( )

3 ( ) 3

가

가

< 515 ,2012.6.22 >

1 ( )

2 ( )

< 1491 ,2012.12.31 >

1 ( ) 2013 1 1

2 ( )

< 1611 ,2013.12.31 >

2014 1 1

< 1670 ,2014.6.11 >

< 1758 ,2014.12.31 >

2015 1 1

[별표 1]

##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의 범위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 교 량 A. 현수교, 사장교 B.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C. 경간 길이 50m이상 포함교량, 1,000m 이상의 일반교량 D. 일반교량	○ 당해공사와 동일등급으로서 연장 1/3이상 단위교량 또는 상위 등급 이상의 단위교량 (기준규모 : 1,000m) *최소규모:길이100m이상, 경간 10m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교량	○ 좌기 공사규모미만의 길이 100m이상으로서 경간 10m 이상의 단위교량공사
2) 공항 A.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B. 청사 (여객및화물터미널)	○ 당해공사 규모 1/3이상의 활주로 또는 유도로, 계류장공사 (기준규모 : 45,000㎡)  ○ 공항청사 또는 운수시설로서 당 해공사 연면적의 1/3이상인 건 축공사(기준규모: 10,000㎡) *다만, 지하철거는 유사공사로만 인정	○ 좌기 공사규모미만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 도로폭 4차선이상과 길이 1km 이상이 포함된 고속도로, 국도의 신설공사(확, 포장공사 포함) *면적으로 환산 적용  ○ 좌기 공사미만의 시설로서 당해공사 연면적의 1/10이상인 건축공사
3) 댐	○ 당해공사와 동일형태 및 당해 공사 규모의 1/3이상 공사 다만, 댐높이 15m이상, 총저 수용량 2천만㎡이상 공사 (기준규모 : 10억㎡)	○ 좌기공사 이외의 댐공사 ○ 하구언공사(500m이상) ○ 저수지공사(3백만㎡이상) ○ 방조제공사(1km이상)
4) 에너지 저장시설 공사	○ 당해공사 유형별 공사규모 1/3 이상의 에너지저장시설공사	○ 좌기공사 규모미만의 에너지 저장시설 공사
5) 간 척	○ 당해공사 간척규모 1/3이상의 간척(매립)공사 또는 당해공사 방조제 규모 1/3이상의 방조제 공사 (기준규모 : 4km) ○ 뚫공사	○ 좌기공사 규모미만의 간척(매립) 공사 또는 방조제 공사 ○ 하구언공사(500m이상) ○ 저수지공사(3백만㎡이상) ○ 준설공사
6) 항 만	○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항만 공사(종합해양공사(인공섬축조등)) *준설, 매립 제외 * 계류시설(외곽시설)만 발주 할 경우는 계류시설(외곽시설) 만 동일공사로 인정	○ 좌기공사 규모미만의 항만공사 {종합해양공사(인공섬축조 등)} *준설, 매립 제외 * 계류시설만 발주할 경우 외곽시설은 유사공사로 분류 (반대의 경우도 동일)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7) 철 도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철도· 지상구간 지하철공사 (기준규모 : 5km)	○좌기공사 규모미만의 철도· 지상구간 지하철공사 ○교통시설용 모노레일공사
8) 지하철(도시철도)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지하철공사(기준규모 : 1km)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함 ※지하구간만 발주할 경우 지상 구간은 동일공사에서 제외	○좌기공사 규모미만의 지하철 공사 ○철도·도로의 터널부분공사
9) 터널공사	○당해공사 규모1/3이상의 터널 공사 (기준규모 : 1km) ※ 용도별로 구분 적용 : 교통터널과 기타터널로 구분 ※ 기타(수로 등)터널을 발주할 경우 교통터널은 기타터널과 동일한 터널로 봄	○좌기공사 규모미만의 터널공사 ○당해공사 용도이외의 터널공사
10) 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등 당해공사 발전소 형태의 발전 용량 1/3 이상 (기준규모 : 4만kw)	○당해 공사형태의 좌기공사 규모미만의 발전소 공사 ○동일한 공사형태 이외의 발전소 공사
11) 쓰레기소각로	○쓰레기소각로 당해공사 형식별 (스토커식, 유동상식, 로타리킬른식) 공사규모 1/3이상 - 규모: 소각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 소각톤수 기준 (기준규모 : 300톤)	○당해공사 형식의 좌기공사 규모미만의 쓰레기소각로공사 ○동일한 공사 형식이외의 쓰레기소각로 공사
12) 폐수종말처리장	○당해공사의 처리방법으로서 1/3이상 용량의 폐수 또는 하수 종말처리장 (기준규모 : 3만톤/일) ※설계평균 방류수량 기준	○좌기 동일한 종류 이외의 공사 로서 처리용량 3천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방법 불문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3) 하수종말처리장	○당해공사의 처리방법으로서 1/3이상 용량의 하수 또는 폐수 종말처리장 (기준규모 : 5만톤/일) ※설계평균 방류수량 기준	○좌기 동일한 종류 이외의 공사 로서 처리용량 5천톤/일 이상의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 처리방법 불문
14) 준 설	○당해공사 규모 1/3이상의 준설 공사	○좌기공사 규모미만의 준설공사 ○준설장비에 의한 해상 준설토 매립 공사
15)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6) <삭제>	<삭제>	<삭제>
17) 관람집회 시설 A. 공연시설, 집회 시설  B. 관람장(운동경기 관람장)	○공연시설, 집회시설로서 당해 공사 연면적의 1/3이상인 건축 공사 (기준규모 : 30,000㎡)	○좌기공사 규모미만의 공연시설, 집회시설로서 당해공사 연면 적의 1/10이상인 건축공사 ○전시시설로서 당해공사 연면 적의 1/5이상인 건축공사
	○관람장으로서 당해공사 연면적의 1/3이상인 건축공사 (기준규모:30,000㎡)	○좌기공사 규모미만의 관람장 으로서 당해공사 연면적의 1/10이상인 건축공사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8) 전시시설(전시장)	○ 전시시설로서 당해공사 연면적의 1/3이상인 건축공사 (기준규모 : 30,000㎡)	○ 좌기공사 규모미만의 전시시설로서 당해공사 연면적의 1/10이상인 건축공사 ○ 공연시설, 집회시설로서 당해공사 연면적의 1/5이상인 건축공사
19) <삭제>	<삭제>	<삭제>
20) <삭제>	<삭제>	<삭제>
21) 송 전 A. 765KV급 B. 345KV급 C. 154KV급	○ 당해공사 동일전압급 회로연장 1/3이상 규모의 공사(기준규모 : 10C'km) ○ 좌기해당 상위 전압급이상의 송전 선로공사	○ 당해공사와 동일전압급 회로연장 1/3미만 규모의 공사 ○ 당해공사의 직하위 전압급 회로연장 10C'km이상의 공사 ○ 당해공사의 차하위 전압급 회로연장 30C'km이상의 공사
22) 변 전 A. 765KV급 B. 345KV급 C. 154KV급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전압급으로서 당해공사 규모(추정가격) 1/3이상의 변전공사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전압급으로서 당해공사 규모(추정가격) 1/3미만의 변전 공사 ○ 당해공사의 하위 전압급 공사

## ※(주)

1) 유형별 공종은 다음과 같다.

I 유형 : 1)교량, 7)철도, 8)지하철, 9)터널공사,

II 유형 : 11)쓰레기소각로, 12)폐수종말처리장, 13)하수종말처리장

III유형 : 2)공항, 6)항만, 14)준설, 17)관람집회시설, 18)전시시설

※ 입찰대상 공종이 I, II, III 유형에 속하지 않는 공종은 I, II, III 유형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2) 당해 공사 1/3이상 규모가 기준규모보다 클 경우는 기준규모이상의 실적은 동일공사로 본다.

3) 당해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연장, 용량 등으로 비교가 곤란한 경우 금액으로 비교 평가한다

4) PQ 대상공사의 범위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기준의 공종과 동일 및 유사공사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5) 교량 또는 터널의 연장은 시점과 종점으로 하되 상·하행선, 시·종점 구간이 분리된 경우 합산연장의 1/2로 한다.

5-1) 교량공사에 있어서 등급이 같거나 다른 경우에 평균기준규모와 금액은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되 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적용하며, 동일공사 인정규모는 합산 평가기준규모의 1/3을 적용한다.

6) <삭제>

7) 용도가 복합된 건축공사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8)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9) 동일 및 유사한 공사의 실적인정은 준공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가 포함)기준 10억원 이상만 인정한다.

[별표 2] <삭제>

## [별표 3]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분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

## 1. 시공경험평가(45점)

가.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규모 (길이 또는 용량 및 면적 등 기준)	18.0	A.300%이상 B.220%이상 C.165%이상 D.110%이상 E. 55%이상	A.300%이상 B.200%이상 C.150%이상 D.100%이상 E. 50%이상	A.270%이상 B.180%이상 C.135%이상 D. 90%이상 E. 50%이상	18.0 15.9 13.9 11.9 9.9
	2)금액(실적인정 규모 이상 공사(중)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판급포함	16.0	A. 300%이상 B. 220%이상 C. 165%이상 D. 110%이상 E. 55%이상	A. 300%이상 B. 200%이상 C. 150%이상 D. 100%이상 E. 50%이상	A. 270%이상 B. 180%이상 C. 135%이상 D. 90%이상 E. 50%이상	16.0 14.2 12.4 10.6 8.8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3)금액 또는 규모	22.0	A. 300%이상 B. 220%이상 C. 165%이상 D. 110%이상 E. 55%이상	A. 300%이상 B. 200%이상 C. 150%이상 D. 100%이상 E. 50%이상	A. 270%이상 B. 180%이상 C. 135%이상 D. 90%이상 E. 50%이상	22.0 19.5 17.0 14.5 12.1
다.최근5년간 공사실적	4)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11.0	실적합계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 실적계수			실적계수 ×11.0= 평점 (단, 상한은 11.0점)

\*주 :

- 1) 심사항목의 '가'와 '나'는 택일 적용
- 2) 평가등급은 [별표1]에서 규정하는 공사유형에 따라 적용
- 3)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실적증명서는 매 PQ심사 신청시마다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공사의 PQ심사에서 검증되어 계약판서에 등록된 실적은 PQ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4) 합병등의 경우 시공경험평가는 "[별표4]의 4. 10)"에 의한다.

## 나. 추정가격이 1천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인 경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규모 (길이 또는 용량 및 면적 등 기준)	18.0	A.300%이상 B.220%이상 C.165%이상 D.110%이상 E. 55%이상	A.300%이상 B.200%이상 C.150%이상 D.100%이상 E. 50%이상	A.270%이상 B.180%이상 C.135%이상 D. 90%이상 E. 50%이상	18.0 15.9 13.9 11.9 9.9
	2)금액(실적인정 규모 이상공사(총)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16.0	A.300%이상 B.220%이상 C.165%이상 D.110%이상 E. 55%이상	A.300%이상 B.200%이상 C.150%이상 D.100%이상 E. 50%이상	A.270%이상 B.180%이상 C.135%이상 D. 90%이상 E. 50%이상	16.0 14.2 12.4 10.6 8.8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3)금액 또는 규모	22.0	A.300%이상 B.220%이상 C.165%이상 D.110%이상 E. 55%이상	A.300%이상 B.200%이상 C.150%이상 D.100%이상 E. 50%이상	A.270%이상 B.180%이상 C.135%이상 D. 90%이상 E. 50%이상	22.0 19.5 17.0 14.5 12.1
다.최근5년간 공사실적	4)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11.0	실적합계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5] =실적계수			실적계수 ×11.0=평점 (단 상한은 11.0점)

※ 주 : (1.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인 경우와 같음)

## 다.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 규모 (길이 또는 용량 및 면적 등 기준)	18.0	A. 200% 이상 B. 165% 이상 C. 110% 이상 D. 55% 이상 E. 15% 이상	A. 200% 이상 B. 150% 이상 C. 100% 이상 D. 50% 이상 E. 10% 이상	A. 180% 이상 B. 135% 이상 C. 90% 이상 D. 45% 이상 E. 10% 이상	18.0 15.9 13.9 11.9 9.9
	2) 금액 (실적인정 규모 이상 공사(총)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16.0	A. 200% 이상 B. 165% 이상 C. 110% 이상 D. 55% 이상 E. 15% 이상	A. 200% 이상 B. 150% 이상 C. 100% 이상 D. 50% 이상 E. 10% 이상	A. 180% 이상 B. 135% 이상 C. 90% 이상 D. 45% 이상 E. 10% 이상	16.0 14.2 12.4 10.6 8.8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3) 금액 또는 규모	22.0	A. 200% 이상 B. 165% 이상 C. 110% 이상 D. 55% 이상 E. 15% 이상	A. 200% 이상 B. 150% 이상 C. 100% 이상 D. 50% 이상 E. 10% 이상	A. 180% 이상 B. 135% 이상 C. 90% 이상 D. 45% 이상 E. 10% 이상	22.0 19.5 17.0 14.5 12.1
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4) 입찰공고시 해당 업종 명시	11.0	실적합계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5] = 실적계수			실적계수 × 11.0 = 평점 (단 상한은 11.0점)

※ 주 : (1.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인 경우와 같음)

## 2. 기술능력평가 (45점)

## 가.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상황 (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4.0	A. 4.5이상 B. 3.3이상 C. 2.6이상 D. 1.3이상	14.0 11.9 9.8 7.7
	2) 일반기술자	10.0	A. 26인이상 B. 20인이상 C. 13인이상	10.0 7.8 5.5
	3) 시공지원 기술자	6.0	A. 5인이상 B. 5인미만	6.0 3.3
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4) 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6
	5) 신기술 활용 실적	3.0	A. 60억원 이상 B. 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3.0 2.6 2.2 2.0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6) 당해공사의 동일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3.0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 10년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6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7)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1 6.2 5.3 4.4

※ 주 :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8)에 의하며,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 확인서에 의한다.

1-1)경력기술자 평가방법은

가) 별첨양식8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PQ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의 건설업무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1-2) 준설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의 2)일반기술자 와 3)시공지원기술자의 등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일반기술자 / A : 16인이상, B : 12인이상 C : 8인이상

나) 시공지원기술자 / A : 3인이상, B : 3인 미만

2) '나'목은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5)의 활용 실적 평가시 신기술 미보유업체에 대하여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다'목에 의한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은 입찰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고, 제출된 실적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년은 365일로 계산)

4) 기술개발투자비율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4-1)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의미함

## 나. 추정가격이 1천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인 경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상황 (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4.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4.0 11.9 9.8 7.7
	2)일반기술자	10.0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10.0 7.8 5.5
	3)시공지원 기술자	6.0	A. 4인이상 B. 4인미만	6.0 3.3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4)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6
	5)신기술 활용 실적	3.0	A.60억원 이상 B.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3.0 2.6 2.2 2.0
다.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6)당해공사의 동일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3.0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6
라.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7)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 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 개발 투자비율	8.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1 6.2 5.3 4.4

※ 주 :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인 경우와 같음)

다만, 1-2)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일반기술자 / A : 12인이상, B : 9인이상, C : 6인이상

나) 시공지원기술자 / A : 2인이상, B : 2인 미만

## 다.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4.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4.0 11.9 9.8 7.7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10.0 7.8 5.5
	3) 시공지원 기술자	6.0	A. 4인이상 B. 4인미만	6.0 3.3
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4) 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6
	5) 신기술 활용 실적	3.0	A. 60억원 이상 B. 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3.0 2.6 2.2 2.0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6) 당해공사의 동일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3.0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5년 이내 시공실적 C. 7년 이내 시공실적 D. 10년 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6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에 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7)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1 6.2 5.3 4.4

※ 주 :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인 경우와 같음)

다만, 1-2)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일반기술자 / A : 9인이상, B : 7인이상, C : 6인이상

나) 시공지원기술자 / A : 2인이상, B : 2인 미만

## 3. 시공평가결과 (1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시공평가결과	시공평가점수	10	A. 90점 이상 B. 85점 이상 C. 80점 이상 D. 75점 이상 E. 70점 이상	10 9 8 7 6

## 4.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 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A. 제한기간이 2년인 경우 B. 제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 제한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1 -0.5
	3) 국토해양부 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별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별점)	-5	A. 1점이상 2점 미만 B. 2점이상 10점 미만 C. 10점이상 15점 미만 D. 15점이상 20미만 E. 20점 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최근 1년간 국토해양부 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평점 90점이상인 자 B. 평점 80점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이상 70점 미만인 자	2.0 1.5 1.0 0.5
	5)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 이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 이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6)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0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0
	7)최근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최근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8)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평가등급이 우수한 자	+2	〈평가등급〉		+2
		A. 우수	+1.5	B. 양호
9)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평가등급이 우수한 자	+1	〈평가등급〉		+1
		A. 최우수	+0.5	B. 우수
다.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10)최근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2	A. 평균 환산재해율 0.25배이하	+2.0
			B. 평균 환산재해율 0.40배이하	+1.7
			C. 평균 환산재해율 0.55이하	+1.3
D. 평균 환산재해율 0.70배이하			+1.0	
E. 평균 환산재해율 0.85배이하			+0.7	
F. 평균 환산재해율 1.0배이하			+0.3	
G. 평균 환산재해율 1.0배초과			0.0	
11)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0.5	
		B. 과태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2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13) 최근1년간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기술관련사항	14)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2
	15)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을 보유한 자	+2	A. 최우수	+2.0
			B. 우수	+1.5
16)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을 보유한 자	+2	A. 1등급 B. 2등급	+2.0 +1.5	

※ 주 :

-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2-1) 준설공사를 사전심사로 집행할 경우에는 신인도를 평가한다.
- 3)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4) '가'목 1), '다'목 7) 및 8)에 대한 감점은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이 확정된 사항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 5)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6)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 7)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 8) '다'목 8)의 보고의무 위반의 감점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노동부의 건수 산정방식에 의한다.
- 9) '다'목 6)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7. 7. 1.부터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하고, 2008. 7. 1.부터는 7)에 따라 평가한다.
- 10) '나'목 3)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0-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10-2) 신청자가 10-1)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지급시에 발주기관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하도급대금.장비업자 대금의 지급한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표준계약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 증빙서류 사본(원본제시)을 수요기관에서 확인받아 동 일반조건 제4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심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10-3) 심사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동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일부변경 한 경우로서 변경내용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0-4) 낙찰자가 10-3)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5)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10-6)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이행에 따른 가점 부여 및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10-7)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1건 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감점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한 감점의 합이 가장 중한 1건의 점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11) '나'목 8) 및 9)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11-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11-2)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2) '라'목의 녹색기술관련사항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녹색기술관련사항 심사항목의 증빙자료는 주무부(처·청)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12-2)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건축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3-1]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

## 1. 시공경험평가(4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PQ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PQ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경우	
		배점	평점	배점	평점	배점	평점	배점	평점	배점	평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규모 또는 금액(실적 인정 규모 이상 공사(종)의 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포함)	34.0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대비 A.300%이상:34.0 B.255%이상:30.9 C.210%이상:27.9 D.165%이상:24.8 E.120%이상:21.8 F.75%이상 :18.7	34.0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대비 A . 3 0 0 % 이 상:34.0 B . 2 5 5 % 이 상:30.9 C . 2 1 0 % 이 상:27.9 D . 1 6 5 % 이 상:24.8 E . 1 2 0 % 이 상:21.8 F . 7 5 % 이 상 :18.7	34.0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대비 A . 3 0 0 % 이 상:34.0 B . 2 5 5 % 이 상:30.9 C . 2 1 0 % 이 상:27.9 D . 1 6 5 % 이 상:24.8 E . 1 2 0 % 이 상:21.8 F . 7 5 % 이 상 :18.7	평가제외		평가제외	
나. 최근 5년간 공사 실적	입찰 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1.0	실적합계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5]=실적계수  실적계수×11=평점(단, 상한은 11.0)	11.0	실적합계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5]=실적계수  실적계수×11=평점(단, 상한은 11.0)	11.0	실적합계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5]=실적계수  실적계수×11=평점(단, 상한은 11.0)	45.0	실적합계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5]=실적계수  실적계수×45=평점(단, 상한은 45.0)	45.0	실적합계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5]=실적계수  실적계수×45=평점(단, 상한은 45.0)

※주 :

- 1) 동일공사의 실적증명서는 매 사전심사 신청시마다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3) 합병등의 경우 시공경험평가는 "[별표4]의 4. 10)"에 의한다.

## 2. 기술능력평가(4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PQ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PQ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		
		배점	평가등급	평점	배점	평가등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사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0.0 7.7 6.6 5.5		평가제외	
	2)일반기술자	20.0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20.0 15.6 11.0	35.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35.0 27.3 19.3
	3)시공지원 기술자	5.0	A. 4인이상 B. 4인미만	5.0 2.8		평가제외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10.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0 8.8 7.7 6.6 5.5	10.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0 8.8 7.7 6.6 5.5

※ 주 :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8)에 의하며,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 확인서에 의한다.

1-1)경력기술자 평가방법은

가) 별첨양식8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PQ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의 건설업무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1-2) 준설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의 2)일반기술자 와 3)시공지원기술자의 등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일반기술자 / A : 16인이상, B : 12인이상 C : 8인이상

나) 시공지원기술자 / A : 3인이상, B : 3인 미만

2) 기술개발투자비율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2-1)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의미함

3) '가'항목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3. 시공평가결과(1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시공평가결과	시공평가점수	10	A. 90점 이상	10
			B. 85점 이상	9
			C. 80점 이상	8
			D. 75점 이상	7
			E. 70점 이상	6

※ 주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4. 신인도 평가(±3)

별표 3의 '제4호(신인도 평가)' 와 같다.

## [별표 4]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 1. 적용범위

- 1) 제6조제4항1호의 평가에 적용한다.
-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 1) 시공실적의 증명은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의한다.
- 2) 전 1)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전 1)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 3) 공사지역별 소관 협회
  - 가) 국내공사 : 건설협회등 관련협회
  - 나) 해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 4)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5) 하도급공사 : 전 '1)' 내지 '2)'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 3.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 1)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 2)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인 경우 건축물대장)
- 3)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 4)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 5) 해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전신환매도율 증명서
- 6)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번역 및 공증서류

#### 4. 시공실적 심사기준

##### 1) 공통사항

- 가) 심사의 대상 : 동일 및 유사 공사의 준공(기성)실적
- 나)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 2) 동일 및 유사공사의 실적규모 인정

1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시공실적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 3) 동일 및 유사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 가) 전2)에 의한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수급인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로 환산 적용하고 그 이외의 화폐인 경우에는 \$(USD)화를 기준으로 환산 적용한다.

##### 4)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규모에 대한 인정은 당해회사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며, 실적증명서에는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 및 구성원 전원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 경간·접안능력·높이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예 ; 당해실적이 경간50m,길이200m의 교량이고 시공비율 20%일때 당해지분 실적이 40m이므로 경간50m실적은 불인정함).
- 다) PQ심사에 의한 경쟁입찰 또는 적격심사의 경우 공동도급 또는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가 당해 PQ심사기준의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PQ심사 신청한 경우는 1건실적으로 인정하여 각각 시공한 비율만큼 인정하고, 인정된 실적을 당해공사의 PQ심사에 적용하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적만큼 인정한다.

##### 5)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 가)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나) 철강재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 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실적은 동일공사 인정에서 제외한다.

다)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6)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

가)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마감일 현재 총공사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을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장이 확인한 완성부분에 한하여 PQ심사기준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당해 공사대비 50%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PQ심사기준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 7)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

단일구조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별지 제5호 서식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8)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 9) 업종별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10)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발주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나) 단위구조물의 하자보증서를 차수별 등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각사별 하자보증비율에 따라 규모 및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한다

## 5. 붙임

가.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나. 시설공사 시공실적(기성율)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lt;별지 제2호 서식&gt;

**공동수급제 현황표**

##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수 요 기 관	
공 사 명		입 찰 일 시	

## 나. 공동수급제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 성 원(2)	구 성 원(3)	구 성 원(4)	구 성 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 행 방 식 및 그 내용	이행 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 (100%)				
④ 시 공 비 율(%)					
⑤ 입찰참가등록번호					
⑥ 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 면허 등	토, 건 도급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 동 일 공사실적	규모 금액				
	⑨ 유 사 공사실적	규모 금액			
⑩ 5년간 실적금액					
⑪ 기술자보유 평가 (경력, 일반, 시공지원)					
⑫ 경영상태 평가					
⑬ 신인도 등록내용					
⑭ 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

1. 공동도급이행방식 및 이행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하되 제7조를 참조하여 기재할 것.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한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공동도급이행방식 및 그 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의거 작성하고 누락 또는 정정개소에 날인이 없거나 연필로 작성된 경우에는 PQ심사 종합평점에서 10%를 감하여 평가함.
4. 본 공동수급제현황표의 내용이 제11조제2항 각호에 저촉되면 동 규정에 따라 조치함.

&lt;별지 제3호 서식&gt;

## 업 체 현 황 조 서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보유 면허·등록 현황						
업종		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공시액	평가 순위	비고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조경공사업						
해외건설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일반					
	별종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소음진동방지시설업						
오수처리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일반	일기계				
		전기				
전문건설업면허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확인·제출·통보·신고·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lt;별지 제5호 서식&gt;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I.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위치								
3)시공사 (대표)	3-1)회사명		3-2)면허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공사기준				4) 년차(금차)공사기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판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판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판급금액		4-3) 준공일자		4-6) 판급금액	
5)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II.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시공사 (대표)	시공사	시공사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 준공금액			
3-2) 판급금액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표시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PQ공 종 시공규모, 방 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PQ공 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 적공종 또는 PQ 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 적공종 또는 PQ 공종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 + 관급)			

### III. 불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  
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 (보완제출 불허)
- 3)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  
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발주판서에 제출하여야 함.
-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 6) 동일구조물 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  
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7)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군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별표 4에 의한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lt;별지 제6호 서식&gt;

## 시설공사 시공실적(기성율)증명서

I.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 위치							
3)시공사 (대표)		3-1)회사 명			3-2)면허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 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공사기준				4) 금차공사기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판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판급)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판급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판급금액
5)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II.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시공사(대표)	시공사	시공사	시공사	시공사	시공사	
1)회사명							
2)대표	(인)	(인)	(인)	(인)	(인)	(인)	
3)공사금액 (계약+판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전체공사 시공금액 (판급포함)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4)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 체적인 시공 물량 표시							

5) 실적증명 발급 일기준 전체공사 의 시공내용,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	시공완료 금 액	시공비율
	합 계							
6) 실적증명 발급 일기준, 실적공종 또는 PQ공종의 시공내용,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	시공완료 금 액	시공비율
	합 계							
7)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자 면허								
7-3)하도급 공사 규모및금액								
7-4)실적증명 발급일기준 시공내용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	시공완료 금 액	시공비율
	합 계							
<b>Ⅲ. 불 입</b>								
1) 기타 당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PQ해당공사의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이 각 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시공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  
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 (보완제출 불허)
- 3) 합병·분할·사업양수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  
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발주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 6) 동일구조물 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  
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7)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군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별표 4에 의한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lt;별지 제7호 서식&gt;

##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 명세서

입찰참가 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별 면 허 번 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b>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b> (금액단위 : 만원)						
구 분	건 수	시 공 금 액		비 고		
20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연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3년)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 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PQ 및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시공금액은 당해연도의 기성금액과 판급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7-1호 서식을 사용하되 실적증명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명기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함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불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						
1. 위와 같이 최근 5(3)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 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귀청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 ※ 주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명세서 작성은 연도별 최근 시공완료일 순서대로 작성하시고, 발주기관, 공사명, 기성금액, 판급금액, 시공금액(기성금액+판급금액), 공사내용(공사종류 구분 가능하도록 요약)을 기재하여야 함.
2. 발주관서로 부터 입찰참가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업체는 실적 등록이 불가하오니 등록후 실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lt;별지 제7-1호 서식&gt;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b>I. 일반적인 사항</b>				
1)공사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공사 (대표)	3-1)회사명		3-2)업종및 면허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약금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시공금액	
6)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b>II. 시공실적의 내용</b>			
구분	시공사(대표)	시공사	시공사
1)회사명			
2)대표	(인)	(인)	(인)
3)시공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업종(면허)별 00년도 공사내용			
5)업종(면허) 별 00년도 시공금액	시공금액		
	기성금액		
	관급금액		

<b>III. 붙임</b>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199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 (보완제출 불허)
- 2) 관계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사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함
-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5) 시공금액은 당해연도에 시공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
- 6)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군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별표 4에 의한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lt;별지 제8호 서식&gt;

## 건설 기술자 보유 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PQ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수
일 반 기 술 자	토 목	항만및해안,도로및공항,토목,토목시공,철도,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화약류관리,광산보안	당해 PQ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지하철,터널,준설 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건 축	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전기설비,건축시공,건축,실내건축,소방설비,승강기기사,조경	당해 PQ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집 회시설, 전시시설 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기 계 · 환 경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대기관리,수질관리,용접,소음진동,폐기물처리,일반기계,소방설비	당해 PQ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전 기	전기,전기공사,철도신호,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	당해 PQ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변전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시 공 지 원 기 술 자	토 목	토질및기초,도시계획,교통,토목구조,토목품질시험,건설재료시험,건설안전,산업안전,공정관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비파괴검사	당해 PQ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지하철,터널,준설 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건 축	건축구조,건축품질시험,건설재료시험,건설안전,산업안전,도시계획,공정관리,비파괴검사	당해 PQ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집 회시설, 전시시설 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기 계 · 환 경	건설안전,산업안전,공정관리,건설재료시험,비파괴검사	당해 PQ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하수종말처리장)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전 기	건설안전,산업안전,공정관리,건설재료시험,비파괴검사	당해 PQ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변전)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 1) 기술자 보유 확인은 당해공사의 기술분야 기술자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학력·경력기술자의 기술분야별 기술자종류에 따른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기술자로 분류

&lt;별지 제9호 서식&gt;

## 건설 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 종 류	기술자 등 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판급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 주 자	공 사 명	PQ 해당 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 사 금 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p>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201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p>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 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 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 2) PQ해당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의 누락, 미기재,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인정 함.
- 3) 기술자등급판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건설기술자 등급 기재

&lt;별지 제10호 서식&gt;

표준계약서 사용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국방관서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